

## 개방이사추천위원회규정

제정 : 2018.09.13

개정 : 2021.12.0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학교법인 민송학원 정관」 제20조의4에 의거 개방이사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 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2조(조직 및 기능) ① 추천위원회는 대원대학교 대학평의회(이하 “대학평의회” 라 한다)에 둔다.

② 추천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개방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
2. 개방감사 추천에 관한 사항

③ 추천위원회는 법인으로부터 개방이사와 개방감사(“개방임원” 이라 한다)의 추천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방이사는 대상인원의 2배수를, 개방감사는 단수를 추천한다.

제3조(구성)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,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
2.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
3.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

② 대학평의회 의장은 법인으로부터 개방임원 선임대상자 추천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의 각 구성단위로부터 구성된 추천위원회에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4조(임기) ①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대학평의회에서 위촉한 위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.

② 보선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 등) ①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

②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.

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
제6조(개방임원의 자격) ① 개방임원은 설립자의 창학이념 및 법인의 설립목적과 건학이

념을 계승·발전시킬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임원으로 추천될 수 없다.

1.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의하여 법인 이사 또는 감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
2. 추천일 현재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 중인 사람. 다만, 개방임원으로 추천되어 재직 중인 사람은 예외로 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3. 추천일 현재 법인에 재직 중인 이사 또는 감사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

제7조(회의) ① 개방임원 추천 사유가 발생할 시 회의를 소집하고, 회의 개최에 대한 사전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

③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회의록) ① 추천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천위원회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9조(간사) ①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② 간사는 대학평의회 간사가 겸임한다.

③ 간사는 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10조(비밀유지) 추천위원회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11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「사립학교법」 및 「동법 시행령」, 「법인 정관」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개방임원의 추천에 관해 구성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및 임기는 종전대로 유지한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